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21
----------	-------

제출년월일 : 2024. 8. 13.
발 의 자 : 박은경,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설호영, 유재수,
선현우, 김유숙, 박은정,
최진호, 현옥순, 최찬규
의원(12인)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 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
-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금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관련 공무원에 교육 실시(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붙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안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8)